

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신청인	상호(사업장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
	주소		(전화번호:)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	수수료 5,000원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,000원)					
처 리 절 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 수 (민원실)	→	검 토	→	결 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: 유역(지방)환경청장(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)						